

법무부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기 관 명 (부 서 명)	법무부 (검찰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되고,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개시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공직자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안 제2조)

나. 부패·경제·선거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 금액 등의 검사의 수사개시 기준 설정(안 제3조)

- 1) 부패범죄 중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의료리베이트·배임수증재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

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 2) 경제범죄 중 자본시장법위반, 산업기술, 부정경쟁, 파산회생, 공정거래 유형 범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 대외무역의 경우 ‘수입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조작가액 10억원 이상’,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 3) 선거범죄의 경우 ‘금품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사기관 설치 등 당선무효 또는 자격상실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0. 8. 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사개시 기준)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위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또는 검사가 사건 수사 중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하여 영 제2조의 중요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등)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수사개시 기준

범죄		수사개시 기준
부패범죄 (영제2조 제1호)	나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다목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라목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마목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바목부터 자목까지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차목	수수금액 합계 3,000만원 이상
	카목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과 같음
경제범죄 (영제2호 제2호)	라목부터 카목까지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 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
	하목 중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 제53조의2에 해당하는 제55조 내지 제57조	수출입가액 50억원 이상 조작가액 10억원 이상
	더목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과 같음
선거범죄 (영 제2조제4호)		금품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사기관 설치 등 당선 무효 또는 자격상실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